

상임위 출결석 명단 건 관련자료

## 소장

원 고 김 규 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정화, 이상호, 최은순

피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 청구취지

1.국회의장이 원고에 대하여 1998. 6. 19. 에 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결석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1. 원고는 1998. 5. 19.에 피고를 상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출결석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2. 그런데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여부 통지조차도 원고에게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3. 이러한 국회의 태도는 헌법과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출결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참여민주사회의 국민, 즉 유권자로서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피고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앞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여야 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4. 국회의장의 이러한 부작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있었던 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8. 6. 19.에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부
1. 기타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1통
1. 위임장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998. 9.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은 순

행정법원 귀중